

시민권 및 신원 증명 요건

Healthy Families/Medi-Cal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자인 자녀용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자녀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카운티의 Medi-Cal 사무소는 자녀의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자녀는 이 기간 동안 Medi-Cal 의 보상을 받습니다. 자녀가 계속해서 완전한 Medi-Cal 혜택을 받으려면 카운티 사무소에 자녀에 대한 시민권 증명서 및 신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시려면 아래의 설명을 읽으십시오.

모든 자녀가 시민권 증명서 및 신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자녀들은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음의 혜택을 받는 자녀:
 - 생활 보조금(SSI)
 - Medicare
 - 사회 보장 장애 보험(SSDI)
 - 장애가 있는 유족에 대한 사회 보장 은퇴 및 유족 보험(RSI-제 II 편)
- 미성년자 동의 서비스(Minor Consent Services)를 요청한 21 세 미만의 자녀
- Medi-Cal 에 가입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유아
- 가정 위탁 보호(Foster Care), 입양 보조금(Adoption Assistance), 또는 Kin-GAP 혜택을 받고 있는 자녀
- 기아 프로그램 (Abandoned Baby Program)의 보호를 받고 있는 유아
- CalWORKs 수혜자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나 국적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미국 국적자에는 미국령 사모아(스웨인즈 아일랜드 포함)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출신의 특정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자녀의 시민권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카운티가 자녀의 출생 기록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출생 기록은 시민권 증명서에 해당됩니다.)

캘리포니아 출생 기록 신청서(Request for California Birth Record)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양식을 지역 사회 복지 사무소로 우송하거나 직접 제출하십시오. 출생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면 다른 시민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서류의 리스트는 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자녀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카운티에 시민권 증명서를 입수하는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출생 증명서 요금을 지불하기 전에 카운티에 연락하여 자녀의 신원과 일치하는 출생 기록을 찾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카운티가 자녀의 출생 기록을 입수하는 경우에도 신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자녀가 16 세 미만이고 자녀의 출생일과 출생지가 표시된 Medi-Cal 신청서 또는 Healthy Families/Medi-Cal 통합 신청서를 작성 및 서명한 경우에는 신원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서명한 신청서가 자녀의 신원 증명서입니다.)

자녀가 16 세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16 세 이상인 자녀에 대해서는 시민권 증명서와 신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시민권 및 신원 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카운티 사무소는 시민권 및 신원 증명 서류의 원본이나 발급 기관이 증명한 사본이 필요합니다.

시민권 증명서나 신원 증명서를 우송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카운티는 원본을 복사한 후에 귀하에게 반송합니다. 또한 귀하는 서류를 각 지역의 사회 복지 사무소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무소에 원본을 복사하고 즉시 돌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시민권 증명서나 신원 증명서는 여러 번 제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시민권 증명서와 신원 증명서는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시민권 증명서와 신원 증명서를 입수하는 동안 자녀에 대한 일반 치료비나 치과 치료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권 및 신원 서류를 입수하는 동안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Medi-Cal 이 그러한 치료비를 대신 지불할 수 있습니다. (916) 403-2007 로 보건 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의 수혜자 서비스(Beneficiary Services)에 전화하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시민권 및 신원 증명 서류

시민권 증명서와 신원 증명서를 한 번에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제한 조건이 없이 발급된 미국 여권(유효 기간이 만료된 여권도 인정)
- 귀화 증명서(N-550 또는 N-570)
- 미국 시민권 증명서(N-560 또는 N-561)

- 또는 -

위와 같은 서류가 한 가지도 없으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아래의 리스트에 포함된 시민권 증명 서류 중 한 가지

- ❖ 미국 출생 증명서
- ❖ 출생 신고 증명서(DS-1350)
- ❖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 출생 신고서(FS-240)
- ❖ 미국 국무부 출생 증명서(FS-545 또는 DS-1350)
- ❖ 미국 시민권자 신분증(I-197 또는 I-179)
- ❖ 아메리칸 인디언 신분증(I-872)
- ❖ 북마리아나 제도 주민 신분증(I-873)
- ❖ 미국 내 출생지가 표시된 최종 입양 판결문
- ❖ 미국 외 지역에서 출생했고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의 법적/신체적 보호를 받고 있는 자녀에 대한 입양 증명서(IR-3 또는 IR-4)
- ❖ 1976년 6월 1일 이전에 발급된 미국 공무원 재직 증명서
- ❖ 미국 내 출생지가 표시된 미군 복무 기록
- ❖ 출생 시 작성된 미국 병원 기록 *†
- ❖ 생명보험, 건강보험 또는 기타 보험 기록 *†
- ❖ 미국 내 출생지와 출생일 또는 연령이 표시된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미국에서 작성된 종교 기록
- ❖ 미국 내 출생지, 입학일, 출생일, 부모의 이름과 출생지가 표시된 초기 학교 기록
- ❖ 신청인의 연령과 미국 시민권 또는 출생지가 표시된 연방이나 주의 인구조사 기록

- ❖ 세네카 인디언 부족 인구조사 기록 *†
- ❖ 인디언 업무국(Bureau of Indian Affairs)의 나바호 인디언 부족 인구조사 기록 *†
- ❖ 미국 각 주의 인구 등태 통계국에 등록된 출생 통지서 *†
- ❖ 지연 미국 공공 출생 기록(출생 후 5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기록) *†
- ❖ 출산을 담당한 의사 또는 조산사가 서명한 진술서 *†
- ❖ 인디언 업무국(Bureau of Indian Affairs)의 알래스카 원주민 명부 *†
- ❖ 미국 내 출생지가 표시된 간호 또는 전문 보호 시설(skilled care facility)이나 기타 기관의 입원 서류 *
- ❖ 의료 기록(예방접종 기록은 제외) *†

* 최초 Medi-Cal 신청일로부터 최소한 5년 이전의 날짜가 기재되어야 하고 미국 내 출생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16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서류는 출생과 가까운 시점에서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리스트의 위쪽에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명의 성인에게 시민권 진술서(Affidavit of Citizenship)를 작성 및 서명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러한 성인들은 모두 자신의 미국 시민권 및 신원에 대한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그 중 1명만이 친척이면 됩니다.

- 그리고 -

아래의 리스트에 포함된 신원 증명 서류 중 한 가지

- ❖ 미국의 주 또는 영토에서 발급되었고 사진이나 신원 확인이 가능한 다른 정보가 들어있는 운전면허증
- ❖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 ❖ 미군 신분증 또는 징병 기록

- ❖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신원 정보가 들어있는 연방, 주, 지방 정부 신분증
- ❖ 미군 부양 가족 신분증
- ❖ 미국 여권(제한 조건이 있는 여권)

뒷면에 계속

- ❖ 인디언 혈통 정도 증명서 또는 기타 미국 아메리칸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부족 증명 서류
- ❖ 미국 해안경비대 상선 선원 신분증
- ❖ 직원 신분증,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대학 학위증, 결혼 증명서, 이혼 확인서, 재산 양도/소유 증서와 같은 3 건 이상의 확인 서류
- ❖ 16 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클리닉, 의사 또는 병원의 기록
- ❖ 16 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학교, 유아원 또는 보육원의 기록(성적표 포함). 카운티는 이러한 기록을 교육기관에 확인합니다.
- ❖ 요양소 거주 장애인에 대한 요양소 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서명한 진술서

시민권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16 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자녀의 부모, 보호자 또는 자녀를 돌보는 친척이 서명했고 출생지와 출생일이 표시된 자녀의 신원 진술서
- ❖ 자녀의 부모, 보호자 또는 자녀를 돌보는 친척이 서명했고 출생지와 출생일이 표시된 Medi-Cal 신청서 또는 Healthy Families/Medi-Cal 통합 신청서

18 세 미만의 자녀가 학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보호자 또는 자녀를 돌보는 친척이 서명한 자녀의 신원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 유효 기간이 만료된 신원 서류도 신원 증명서로 인정됩니다.